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별책부록 64~64p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관련 [별표 2]	오타	2.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가.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나.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원경찰	2.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가.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 나.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
159~159p 1번 지문 번호 : 70	문제-문항	①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	①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,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177~177p 핵심만 콕 번호 : 98	해설	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48시간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(경비업법 제18조 제2항).	경비업자가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(경비업법 제18조 제2항).
198~198p 2번 지문 & 쑥쑥해설 2번 번호 : 12	문제-본문	기출 02 문항 ②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성실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 쑥쑥해설 ②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을 뿐이다.	기출수정 02 문항 ②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1회 변경한 때 쑥쑥해설 ②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1회 변경한 때의 행정처분은 경고이다.
200~200p 3번 문항 번호 : 16	문제-문항	기출 99 ③ 허가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시	기출수정 99 ③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
404~404p 쑥쑥해설 번호 : 15	해설	지방경찰서장이 관할을 같이 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는 ①·②·③과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권한이 있다(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).	지방경찰청장이 관할을 같이 하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는 ①·②·③과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권한이 있다(청원경찰법 시행령 제20조).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